



: 2018-06-27

## 서울 행정법원

### 제 1 2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7612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5. 10.

### 주 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하남시에 있는 'B정형외과'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유명제약(이하 '유명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 1087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1722호),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유명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가. 16) 바)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3. 29., 이하 '현행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의 [부표 2]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 가목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현행 시행규칙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 3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의 과도한 처분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현행 시행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



: 2018-06-27

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영일

                  판사            이원재



[별지]

관련 법령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10개월 자격정지 8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2개월
---	----------------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 가목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 라목 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 제 1항 제9호	부표 2와 같음

[부표 2]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  
: 2018-06-27

4차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	-----------

끝.